1. 곡성군체육회 사무국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곡성군체육회 (이하 "본회"라 한다) 정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사무국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인사 및 채 용

1절 인 사

- 제2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 곡성군 직원 및 지도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「인사위원회」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 -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 한다

2절 채 용

- 제3조(적용) 직원의 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따르며, 생활체육지도자 (이하 "지도자"라 한다)는 "생활체육 지도자 운영규정"에 따른다.
- 제4조(채용)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체육회 인사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
- 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명 될 수 없다.
 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- 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- 9.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사람

제 3 장 교 육

- 제6조(교육) 1. 직원 및 지도자는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의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
 - 2. 직원 및 지도자는 체육 정보 수집, 분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지 및 해외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.
 - 3. 기타 지도자 교육 관련 사항은 본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다.

제 4 장 직 제

제7조(직렬) 사무국의 직렬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- ① 일반직
- ② 계약직
- ③ 생활체육지도자
- ④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
- 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 항의 직렬 외에 임시직을 둘 수 있다.

제 5 장 복 무

1절 근무

- 제8조(직원 및 지도자의 임무) ① 직원 및 지도자는 법령 및 본회 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직원 및 지도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
 - ③ 직원 및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다.
 - ④ 직원 및 지도자는 법률에 의한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제9조(금지사항) ① 직원 및 지도자는 회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 다만,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무국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직원 및 지도자는 그 업무와 관계하여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.

- 제10조(근무시간)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따르며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본회 생활체육지 도자 운영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른다.
- 제11조(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) ① 사무국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 될 경우 직원 및 지도자에게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수 있다.
- 제12조(근대) ① 직원 및 지도자가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직원 및 지도자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참으로 하며, 12 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. 다만,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③ 직원 및 지도자가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직원 및 지도자가 사무국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는 무단결근 1일로, 월 3회를 초과하는 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. 이 경우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.

제2절 휴일 및 휴가

- 제13조(휴무일)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무일로 한다.
 - 1. 주휴일
 - 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
 - 3. 근로자의 날
 - 4. 대한체육회 창립기념일
 - 5.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
 - ② 제1항 제1호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14조(휴가의 종류) 직원 및 지도자의 휴가는 연가유급휴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 로 구분 한다

- **제15조(연가)** ① 직원 및 지도자는 "별표 제3호"의 기준에 따라 연가를 얻을 수 있다.
 - 1.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
 - 2. 1년간 80% 이상 근무자는 15일 부여한다.
 - 3. 3년 이상 계속 근무자 15일의 유급휴가에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하고 이 경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무단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제외한다.
 - ③ 연가는 1회에 7일을 넘지 못하며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 - ④ 연가는 직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 허가되어야 한다.
 - ⑤ 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⑥ 해당 연도에 결근·휴직·정직·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직원 및 지도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.
 - 1. 병가를 얻지 아니한 직원 및 지도자
 - 2. 제15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직원 및 지도자
- 제16조(병가)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.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및 지도자는 무급으로 하다.
 -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공가)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 야 한다.
 - 1.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, 소집,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경우
 - 2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경우
 - 3. 천재지변,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
 - 4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 할 경우
 - 5.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, 법원,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출석할 경

우

- 6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제18조(특별유급휴가) ① 본인이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"별표 제2호"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 - ② 임신 중인 직원 및 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신 중인 직원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임신 중인 직원 및 지도자가 유산(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),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 - 2. 임신 중인 직원 및 지도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.
 - 3. 임신 중인 직원 및 지도자가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 - ③ 풍해·수해·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얻은 직원 및 지도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제6장 휴직제도

제19조(휴직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.

- 1.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: 징집 및 소집기간
- 2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: 법률에 서 정하는 기간
- 3. 업무상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: 최대 2년
- 4. 업무 외 재해 등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: 최대 4개월
- 5.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: 최대 4개월
- ② 직원 및 지도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 "별표 제6호" 서식에 따라 휴직일 15일 전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0조(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) ① 휴직 중인 직원 및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
- 2. 휴직 중 거주지,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본회에 즉시 신고 할 것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직원 및 지도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.
 - 1.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.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2. 업무 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2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,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21조(직권휴직) ① 직원 및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장은 본 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 - 1. 질병휴직 :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
 - 2. 병역휴직 :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·소집 되었을 때
 - 3. 행방불명 : 천재지변·전시·사변 기타 사유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음 때
 - 4. 법정의무수행 :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 - ② 임기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· 제2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- 제22조(질병휴직) ① 회장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·보건소장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. 단,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연장기간 포함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.
 - ③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되며, 휴 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 내 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.
 - ④ 휴직의 횟수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23조(병역휴직) 회장은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으로 하며,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직권면직이 가능하다.
- 제24조(행방불명에 따른 휴직) 회장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

- 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.
- 제25조(법정의무수행 따른 휴직) 회장은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휴직기간은 의무수행기간으로 한다.
- 제26조(청원휴직) ① 직원 및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 직을 원하면 회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육아휴직 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 요하거나 (친생자, 양자 포함),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
- 제27조(육아휴직) 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대상자녀의 요건(만 8세 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)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휴직을 승인하여야 한다.
 - ② 대상자녀가 "만 8세 이하" 또는 "초등학교 2학년 이하"중 어느 한 요건이라 도 충족하지 못하면 휴직사유 소멸로 당연히 휴직기간이 만료된다.
 - ③ 여성 직원 및 지도자의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.
 - ④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. 자녀 1인에 대하여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, 그이상은 회장의 승인 하에 1년 추가 무급휴직이 가능하다.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.
 - ⑤ 회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8조(휴직의 효력) ①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복직 원을 제출하거나,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직 또는 원직과 동등한 직책으로 복직시킨다.
 - ② 휴직기간 만료 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29조(신분보장) 직원 및 지도자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- 제30조(직권면직) ① 직원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 - 1. 신체·정신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
 - 2. 직제와 정원의 개·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타 직무

-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3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
- 4. 징병검사,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한 경우
- 5.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7. 그 밖에 이 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
-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. 다만, 제1항 제6호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.
- 제31조(복직) ① 직원 및 지도자는 휴직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신청서 "별표 제7호 서식"를 제출해야 한다.
 - ② 직원 및 지도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 및 지도자를 퇴직 처리할 수 있다.
 - ③ 회장은 직원 및 지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 직원 및 지도자로의 복직원 제출이 없더라도,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 7 장 급여 및 수당

1절 급여 지급

- 제32조(적용범위) 직원 및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 및 실비보상 등(이하 "수 당등"이라 한다), 여비의 종류·지급범위·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3조(급여의 결정) 직원 및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. 다만, 곡성군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보조할 수 있다.
- 제34조(급여지급일) 급여는 매월 25일에 직원 및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제35조(계산기간)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제36조(지급방법) 직원 및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.

- 1.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일할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 눈다.
- 3. 1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지급한다. 다만,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퇴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제37조(공제) 직원 및 지도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.
 - 1.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
 - 2.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직원 및 지도자 부담분

2절 수당지급

- 제38조(수당의 지급) 연장·야간 휴일 근무한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.
- 제39조(시간외수당의 관리) 연장·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을 준용하다.
- 제40조(준용규정) 직원 및 지도자의 수당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 등 관계 법규를 준용 한다.

3절 실비보상

- 제41조(정액급식비) 직원 및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.
- ① 임기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제42조(명절휴가비) ① 설날 및 추석날(이하 "지급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 재직 중인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.
- ② 임기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장 징계 및 해고 등

- 제43조(장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해고 : 근로계약을 해지한다.
 - 2. 정직 :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

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3. 감봉 :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, 총액은 월 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.
- 4. 견책 :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.
- 제44조(징계양정의 기준)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 유형·정도 및 고의·과 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의 소행, 근무성적,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의 단순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
- 제45조(징계사유) ① 직원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.
 - 1. 전라남도체육회 또는 곡성군체육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 - 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
 - 3. 전라남도체육회 및 곡성군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- 4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라남도체육회 및 곡성군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
 - 5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,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,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
 - 6.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 -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곡성군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. 이때 직원 및 지도자가 받은 징계처분은 그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제46조(징계절차) ① 회장은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"별지 제1호 서식"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직원 및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·일시를 통보 하여야 하며, 이 때 해당 직원 및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 - ③ 징계대상 직원 및 지도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"별지 제3호 서식"에 따라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, 진술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 - ④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직원 및 지도자에게 "별지 제4호 서식"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⑤ 직원 및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재심 "별지 제6호 서식"을 청구할 수 있다.

- 1. 이의 제기의 취지
- 2.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
- 3. 징계결정 서면통지서
- 4. 기타 필요한 서류 등
- ⑥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.

제9장 정년 및 퇴직

제47조(정년 및 퇴직) ① 사무국장 및 직원, 지도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.

- 1. 직원 및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 로 한다.
- 2.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은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퇴직일로 한다.

제48조(퇴직금) 본회의 직원 및 지도자로써 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 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.

제49조(수령권자)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의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50조(지급일)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써 지급 한다.

- 제51조(퇴직금 중간정산) ①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 중 한가지라도 충족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- 1.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
 - 2.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 - 3. 근로자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
 - 4.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
 - 5.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 - 6. 임금 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
 - 7.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

해당하는 경우

- ② 중간정산 퇴직금은 "별표 제4호"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- ③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.
- ④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직원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.

제52조(관리운영) 퇴직기금은 퇴직금여 보장법에 따라 운용 관리 기관으로 선정한 금융 기관에 예치 운영한다.

- 제53조(퇴직급여) ① 직원 및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퇴직급여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.
 -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.
 - ④ 회장은 직원 및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직원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54조(근속결격)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.

제 10 장 여 비

제55조(여비) 본회의 직원, 지도자가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.

제 11 장 재해보상

제56조(보상)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제 12 장 사무처리

- **제57조(처리근거)** ① 본회의 사무처리는 문서에 따라야 한다. 문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 - ②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된 사항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- 제58조(문서의 종류) 본 규정에서 말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.
 - 1. 업무상 왕복하는 일체의 서류
 - 2. 전화, 통신, 전보 및 각종기록, 도표, 간행물과 도서류 일체
- 제59조(접수절차) ① 접수한 일반문서는 담당자가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금전 기타 귀중품이 첨부된 문서는 그 내용을 접수부에 기입하고 수신자의 수령 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소정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중에 도착 접수된 문서는 당직자가 접수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60조(발송)** ① 발송문서의 발송자는 회장 명의로 한다. 다만, 업무연락의 준 공문서 에 국한하여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.
 - ② 발송방법은 전자문서, 우편, 인편, 그 밖의 수발계통에 의한다.
 - 제61조(결재) ① 기안한 문서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무의 내용에 따라 본회 자체 위임 전결규정을 정하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따라 결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결재로써 우선 시행하고,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예외로 한다.
- 제62조(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)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를 요함으로써 성립되고 상대방에게 접수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63조(문서보관) 본회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보관한다.
 - 1. 영구보존문서 정관, 제규정 등
 - 2. 5년 보존문서 본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, 결산서, 경리 관계서류 및 장부
 - 3. 그 밖의 문서는 정부 공문서 보관 보존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1 장 물품관리

- 제64조(정의) 물품관리라 함은 본회 사업을 위한 물품의 취급, 보관, 사용 및 처분 등 물품관리행위를 말한다.
- 제65조(물품구분) 본회가 소유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.
 - 1. 본회 사무국 비품 및 각종 장비

- 2. 경기용구
- 제66조(물품관리책임)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각 담 당직원을 두어 관리한다.
- 제67조(검수) 구입 또는 수리, 제작으로 인한 물품취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.
 - 1.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물품의 수량 및 규격이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.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2.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3.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에 당해 물품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8조(불용품)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
- 1. 저장물품 중 장래 사용가치가 없는 물품
- 2.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품
- 3. 장기사용으로 노화되어 사용 불가능한 물품
- 4. 기타 폐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

제69조(처분) 기본 재산을 제외한 불용품처분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결정 한다.

부 칙

제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체육회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2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

【별표 제1호】

서 약 서

본인이 금후 사무국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함에 있어서 귀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명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 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이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서약인 직 :

성명: 인

곡성군체육회장 귀하

【별표 제2호】

사무국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경조사별 휴가 일수

구 분	대 상	일 수
	본인	5
결 혼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5
입양	본인	20
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	3
사 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(형, 형수, 동생, 제수)	1
	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(삼촌, 숙모, 처삼촌, 처숙모)	1

【별표 제3호】

사무국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

재 직 기 간	연 가 일 수	비고
1년 이상 - 3년 미만	15	
3년 이상 - 5년 미만	16	
5년 이상 - 7년 미만	17	
7년 이상 - 9년 미만	18	
9년 이상 - 11년 미만	19	
11년 이상 - 13년 미만	20	
13년 이상 - 15년 미만	21	
15년 이상 - 17년 미만	22	
17년 이상 - 19년 미만	23	
19년 이상 - 21년 미만	24	
21년 이상	25	

【별표 제4호】

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

	소 속	성 명	
신청인	직 명	생년월일	
	입사일자		

신 청 내 용

중간정산일자		년	월	일	
신 청 사 유					
수 령 계 좌	은 행 명			예 금 주	
구 중 게 각	계좌번호				

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【별표 제5호】

징 계 양 정 기 준

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	비위의 도가 고의가 있는		중과실이거	가 중하고 나, 비위 경하고 고 경우	경과실이거	가 중하고 나, 비위 하고 중과	비위의 도 경과실인	
1. 성실의무 위반	파면/히	개임	강	니	정직/	/감봉	견	책
가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			정	직	감	봉	견	책
나. 기타								
2. 복종 의무 위반	해	임	정	직	감	봉	 견	책
3. 비밀엄수의무 위반	해	임	강	니	정직/	/감봉	견	책
4. 청렴의무 위반	해	임	정	직	감	봉	견	책
5. 품위유지의무 위반	해	임	정	직	감	봉	견	책
6. 영리업무 및 겸직	해	임	정	직	감	봉	견	책
금지의무 위반								

【별지 제1호 】

징 계 의 결 요 구 서

	①성			②소속		③ 위(
인 적 사 항	명	한자		④주민 등록번 호			재 직 기 간	
	⑥주소					,		
⑦징계 사유								
⑧징계 의결요구 권자의 의견								
위와	같이 징	계의결	불을 요구합니다	∤.				
인사우	 원회 <i> </i>	위원장	귀하	년 월	일	징계의결	요구권자	@

【별지 제2호 】

확 인 서

	①소	속	②직	급(위)	37	③성 명	
1. 인적사항	(현재)		(현재)		(한글)		
	(혐의당시)		(혐의당시)		(한자)		
	①금품 및	향응수수 관기	계 (□해당됨,	□해당없음)			
2. 비위유형	②공금의 횡]령.유용 관계	ᅨ (□해당됨,	□해당없음)			
	③중점정화	대상 비위관	계 (□해당됨,	□해당없음)			
3. 감경대상	(①공 적 사 형	5}		②징 계 사 형 불문(경고) 포 ^학		
공적유무 및	포상일자	포상종류	시 행 청	일 자	종 류	발 령 청	
감경대상 비							
위 해당여부	③성실.능동 □해당없음)		과정에서의 3	과실로 인한	비위 해당여브	추 (□해당됨,	
4. 혐의자의 평소소행							
5. 근무성적	(○○년 ○(○월)	점, ((00년 00월	릴)	점	
(최근2년)	(○○년 ○()월)	점, ((00년 00월	월)	점	
6. 기 타							
위 기재/	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.						
작성책임자(소속 및 직위) (직 급) (성 명)					(실 인)		
징계의결요-	구권자(직 위)				(관인))	

【별지 제3호】

출 석 통 지 서

. 11	①성 명	한 글			2	소 속				
인적 (1)성 명 사항	한 자			3	직위(급	1)				
10	④ 주 소									
5	출석이유									
6	출석일시			년	월	일	시	분		
7	출석장소									
유	의 사 항	즉시 제 2. 사정에 일까지 3. 정당한 서면 진	위한 출석 출할 것 의하여 서 도착 하도록 사유서를 저 술서를 제출 ·처리한다.	면진술을 - 진술서 출하지	하고/ 를 제출 아니하.	사 할 ^문 할 것 고 지경	때에는 성된 일 <i>/</i>	인사위원. 시에 출석하	회 개최 하지 아니	일 전
	곡성군체 통지 합니디	육회 사무국 ት.	운영규정 저	∥47조 저	1항에	따라	위와 같	이 귀하의	출석을	
		귀하		년	월	일	인사위	원회 위원	장	@

(절 취 선)

진술권포기서

						_	
인적	①성 명	한 글			②소 속		
사항	U 6 6	한 자			③직위(급)		
1.0	④주 소						
	본인은 귀	인사위원회역	에 출석하여	진술하는	는 것을 포기	합니다.	
				년 -	월 일		
					7	성명	@
	인사위원회	위원장 귀	하				

【별지 제4호】

징 계 의 결 서

징계혐의자	①소 숙	숙	②직 위(급)	③성 명
인 적 사 항				
④의결주문				
⑤이 유				
		년	월 일	
	인사위원회]		
	위원	^민 장	0	
	위	원	(1)	
	위	원	@	
	위	원	@	
	위	원	@	
	위	원	@	
	위	원	@	
	위	원	@	
	위	원	@	

【별지 제5호】

징계처분 사유 설명서

①2	산 속	②직 위	(급)	③성 명	
④주 문					
⑤이 유	별첨 : 징계의	결서 사본과 같-	<u>) -</u>		
위와 같이 쳐	서분하였음을 통	지합니다.			
		년 4	일 일		
	귀하		처분 ⁻	권자(처분제청권자)	1
				기의제기를 청구할 수	

【별지 제6호】

재 심 청 구 서

인적사	1	성	명	② 소 <u>속</u>	,
항	3	주	소		
4	징계의결/	서 수	령일		
(5)	신 청	취	지		
6	신 청	୍ଧ	ф.	※ 별지첨부 가능	
⑦ :	첨 부	서	류	- 징계의결서 -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	· 서류
		,	이 규정	제4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	· 신청합니다.
				년 월 일	
				귀하	신청인 ①

【별표 제6호】

휴직신청서

	(A) H	한 글		② 소 속		
인적 사항	① 성 명	한 자		③ 생년월일		
	④ 주	소				
⑤	휴 직 사	÷ ĥ				
6) 휴 직 기	간				
7) 첨 부 서	류				
	본인은	년 (일 부로 휴직:	하고자 하오니 허가 하	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		년	월 일		
					신청인	1
곡성	성군체육회] 회장	귀하			

【별표 제7호】

복직신청서

		한 글		② 소 속		
인적 사항	① 성 명·	한 자		③ 생년월일		
	④ 주	소				
(5)	휴 직 사	유				
6) 휴 직 기	간				
7) 첨 부 서	류				
				일 부로 휴직기간이 종 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		
			년	월 일		
					신청인	0
					L 0 U)
곡성	성군체육회	회 회장	귀하			

【별표 제8호】

사 직 서

성 명	생년월일	소속
사직희망일자		
사직이유 (※구체적으로 기재)		
위와	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]기 바랍니다.
	년 월 일	
	위 작성자	(인)
곡성군체육회장 귀하		

【별표 제9호】

해고(예고) 통보서

성 명	생년월일	소속
해고예고통지일		
해 고 일 자		
해 고 사 유 (※구체적으로 기재)		
	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 예고를 통지힘	: 나다.
	년 월 일	
	곡성군체육회 회	장 (인)

휴가신청서

NO:

\circ	入	소	•	곡성군체육회
•	т-	\neg	•	ᄀᇰᇿ게버ᅿ

- ㅇ 직 위(급):
- ㅇ성 명:
- o 기 간:
- ㅇ사 유:
- ㅇ 휴가 중 업무 대행자
 - 소 속:
 - 직 위(급) :
 - 성 명:

사무국 운영규정 제 22조에 따라, 위와 같이 (연차, 월차, 병가, 특근, 조퇴, 경조휴가, 산전산후휴가, 기타)휴가를 신청합니다.

20 .

신청인:

위와 같이 휴가를 명함.

쳝	팀 장	총괄팀장	전결/ 사무국장
재			

곡성군체육회